

# 2007년 양돈관련 정책 소개

정해년 돼지해를 맞이하여 전국 양돈농가의 번성을 기원합니다. 우리 양돈 산업은 연간 생산액이 약 3.7조원에 달하여 축산물 중 1위, 전체 농산물 중에서는 쌀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농업의 핵심분야입니다. 또한 우리 양돈인들은 의무자조금을 최초로 도입하여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양돈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등 축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돈인들의 노력이 더욱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는 양돈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민철 사무관  
농림부 축산경영과

## | 소모성질환 |

돼지소모성 질환으로 인한 폐사는 우리 양돈업계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사육두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9,382천두('06년 12월)에 달하고 있지만, 도축두수는 11,846천두('06년 11월)로 전년동기 12,286천두에 비하여 오히려 3.6%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사는 '05년 2,218천두에서 '06년 2,610천두로 17%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양돈농가의 손실은 심각한 수준이며, 국산 돼지고기의 공급부족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돼지소모성질환으로 인한 양돈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돼지소모성질환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자문단' 운영,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개정, 양돈농가 순회교육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올해는 '돼지 사육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컨설팅자문단의 활동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질병발생 감소와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제고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축사시설 개선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모성 질환으로 인한 폐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역대책 뿐만 아니라 양돈농가의 적정한 사양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작년 12월 양돈세미나 '돼지폐사 이렇게 줄이자'에서는 모든의 건강, 급수관리, 온도·습도·환기 조절을 통해 폐사율이 '03년 28%에서 '05년에는 2%로 감소한 농장이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양돈인 여러분께서도 사양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폐사를 줄이기 위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 농지법 개정 |

지난 해 말 농지법 개정으로 올해 7월 4일부터는 별도의 전용절차 없이 농지내 축사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축산인들의 노력으로 축산업은 매년 성장을 거듭한 결과 2004년에는 그 생산액이 10조 8,399억원에 달하여 쌀 생산액(9조 9,631억원)을 능가하는 등 농촌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국민의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로 쌀재고는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친환경 축산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농지법은 농지를 경종작물의 경작을 위한 토지로만 간주하여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선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다는 이유로 축사부지 용도로 전용이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축산인들은 축사 설립 및 이전을 위한 적절한 입지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 축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원활한 축사 부지 확보 등 축산여건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농지내 축사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전문가, 농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축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특히 양돈농가는- 가축분뇨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우리 축산업은 더 큰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 |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추진 및 지원 |

정부에서는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91년부터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있으며, 연차적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감축 및 12년 금지에 따라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최대한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나머지 물량은 정화하여 처리 하는 등 전량 육상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보완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양돈농가가 밀집되어 가축분뇨의 적정처리가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07년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5개소를 지원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



용을 촉진하고 연차적으로 지원 개소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간 액비저장조 800개소, 액비유통센터 10개소를 지원하여 가축분뇨 액비화 및 이용을 촉진하고,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퇴비의 이용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07년부터 지역내에서 발생된 가축분뇨 퇴·액비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판매를 알선하는 자연순환농업의 확산을 위해 경종과 축산이 연계된 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에 운영비를 저리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향후 자연과 조화되고 악취 발생이 적은 친환경 축산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축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표준설계도를 보급하여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영위토록 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가축사육기준 시행 |

'07. 1. 1부터 축산업 등록농가(한·육우, 젖소, 돼지, 닭 사육업)는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축산농가가 적정한 사육환경을 유지할 때 가축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각종 약품비용 절감과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많은 부가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쾌적한 농촌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모성 질환으로 인한 폐사와 분뇨처리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업에서는 동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축산업등록 농가수는 전국적으로 55천호('06. 3월말 현재)로 이중 양돈농가는 돼지 9.8천호로 예상됩니다. 해당 양돈농가는 아래의 성장단계별 또는 경영형태별 기준 중 하나를 택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m<sup>2</sup>/두)

| 구 분    | 용 돈 | 번 식 돈 |     |                    |         | 비 육 |     |     |
|--------|-----|-------|-----|--------------------|---------|-----|-----|-----|
|        |     | 임신돈   | 분만돈 | 중부대기돈              | 후보돈     | 자 돈 | 육성돈 | 비육돈 |
| 두당소요면적 | 9.7 | 1.4   | 3.9 | 1.4(스톨)<br>3.1(군사) | 3.1(군사) | 0.3 | 0.6 | 0.9 |

경영형태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m<sup>2</sup>/두)

| 일관경영 | 번식경영(1) | 번식경영(2) | 비육경영(1) | 비육경영(2) |
|------|---------|---------|---------|---------|
| 0.89 | 2.51    | 0.93    | 0.72    | 0.87    |

일관경영 : 번식 - 분만 - 자돈 - 비육

번식경영(1) : 번식-분만

비육경영(1) : 자돈-비육

번식경영(2) : 번식-분만-자돈

비육경영(2) : 비육

축산업등록 농가가 '적정가축 사육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축산법 제4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축산농가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고, 축사환경 개선과 가축질병 예방 등 친환경을 위해 '07. 1. 1부터는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 자조금 활성화 |

양돈업계는 '04년 4월부터 최초로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양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양돈농가가 거출금을 납부하는 의무자조금을 도입한 것은 양돈농가의 협동심·동료애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농가가 1두당 400원씩 납부하는 거출금과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원으로 조성한 자금을 통해 우리 돼지고기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및 양돈농가 교육사업, 양돈업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06년 12월에는 축산자조금의 근거법인 「축산물의 소비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의 내용과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법 제명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의자조금과 의무자조금을 구분하여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의무자조금 대의원의 임기규정(4년)과 보궐선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조금의 용도를 추가(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하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학계 및 유통업계 전문가 추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 정부는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수의 조정과 수반기관 관련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기 과제로 자조금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탄력적으로 지출하여 양돈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돈자조금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들의 의무자조금 지속여부 결정은 그간의 양돈자조금에 대한 양돈인들의 평가이며 다른 자조금 분야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전국의 양돈인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돈농가와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양돈인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돈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돈인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너도나도 위생관리 믿고 찾는 우리돈육